

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1.(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4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찬인)

가. 제안사유

- 충북문화재단 운영비와 기금 적립금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831백만원(도비)
-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 1,800백만원
 - 도비 700, 시군비 700, 기타 400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출연금	1,693	280	348	464	601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충북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충북도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충북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기금 출자는 2017년까지 289억원을 목표로 2015년 현재 조성액이 267억원이며 2016년도 18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이중 도비 7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 본 출연계획안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2016년 운영비에 대한 출연규모가 전년대비 230백만원 증가 (38.26%)된 831백만원임. 운영비의 증가요인은 사무처장 채용 및 정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부대비용으로 판단되며 2016년 뿐 아니라 향후 충북문화재단의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2016년 충북문화재단 인건비 증액내역 >

(단위: 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비 고
1. 급여	363,297	207,695	155,602	
가급(1명)	47,748		47,748	* 사무처장 신규채용
다급(3명)	111,834	69,196	42,638	* 다급 1명 신규채용
라급(1명)	32,847	30,487	2,360	
마급(6명)	164,868	102,012	62,856	* 마급 2명 신규채용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257
----------	-----

제출연월일 : 2015. 10. 2.

제안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 831백만원(도비)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
- 충북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급여, 제수당 등), 일반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차량유지 등), 전산개발비(홈페이지) 편성

②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 1,800백만원(도비 700, 시군비 700, 기타 400)

- 충북문화재단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
- 시군과 매칭하여 조성하는 형태의 기금조성으로 도민들에게 우수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3. 제안자 의견

- 충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요망함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한필수	홍기운	민복기	3822

기관명	충북문화재단								
출자·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표 : 이시종(이사장)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출자·출연 사업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661,373천원(도비 1,561,373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15년 예산액	2016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2016	601	831	831	0	831	0	0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2016	1,400	1,800	1,800	0	700	700	400
* 2016년 요구액은 최종 성과검토 결과액으로 기재									
출자·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 ○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확대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충북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9조(출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도감독 부서인건 (중 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충북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의 지원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증감액은 전임 사무처장 채용, 정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증액분임 ○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을 통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성 목표액 : 289억원(2017년까지) 								
첨부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3. 출자·출연사업계획서 								

1-①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결과 : 나등급(87.78)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자립경영계획, 인력운영계획, 에너지절감 등의 관리계획 다소미흡
- 제안제도활성화, 업무처리개선, 비전실천을 위한 직원의 참여 미흡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였으나, 경영계획설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인력평가제도에 있어서 교육성과 및 수료결과 반영토록 해야 함
- 회계전담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내부통제제도 구축 미흡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 필요경비 출연금 지원 타당함
- 전년대비 증감액은 전임 사무처장 채용, 정규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증액분임
-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기반 마련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기금 조성 지원 필요

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2014년 결산액	2015년 예산액(최종) (C)	2016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448	601	861	831	△30	230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1,000	700	700	700	-	0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충북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 례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3-222-5313 홈페이지 : www.cbfc.or.kr		
주요연혁	- '09. 11. 30. 법인 설립, 1대 대표이사 취임 - '13. 11. 30. 2대 대표이사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15.09.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9명		11명		18명		
임원 (15.09.01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입기 (법령상 정해진 입기 기재)	
	이사장	이○○	충청북도지사				
	대표이사 (비상임)	강○○	충북대학교 교수			2013.11.30.~2015.11.29	
	이사(비상임)	김○○	(사)중원춘학회 총감독			"	
	"	김○○	충북민예총괴산지부			"	
	"	김○○	충북대학교 교수			"	
	"	김○○	前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집행위원			"	
	"	조○○	충북예총연합회장			"	
	"	박○○	충북민예총지회장			"	
	"	이○○	충북문화예술포럼			"	
	"	선○○	보은문화원			"	
	"	양○○	한국국악협회 충북지회 감사			"	
	"	오○○	예술공장 두레 이사장			"	
	"	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	이○○	前민예총충북지회장			"	
	"	임○○	청주대학교 교수			"	
	"	류○○	충북문화원연합회장			"	
	"(윤번제)	오○○	충주부시장			"	
	"	정○○	영동부군수			"	
	"	윤○○	괴산부군수			"	
이사(당연직)	신○○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감사(선임직)	임○○	태울회계법인 회계사			"		
감사(당연직)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장			"		
주요기능	-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민의 문화복지향상, 문화사회 구현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5,128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6,7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26,057
	예산액 ²⁾	7,091	12,944	14,058		부채	928
	지자체 지원액 ³⁾	2,400	2,500	1,800		자본 ¹⁾	25,12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0				13,714(결산액)		0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연	831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 충북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편성

□ 출자·출연개요

- 사업위치 : 충북문화재단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립자산 : 182억원
- 주요기능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 교육·연구 등

□ 산출기초

-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내역 별첨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693	280	348	464	601

□ 기대효과

- 충북문화재단 사무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 등 우리 도의 문화예술 역량 증진을 위해 설립된 충북문화재단의 운영 불가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 출 내 역	'16년	'15년	증감액	비고
총 계		831,511	570,879	259,632	
소 계		590,481	354,619	235,862	
인 건 비	계	363,297	207,695	155,602	
	급여				
	가급 47,748천원×1명	= 47,748	-	47,748	연봉 불가상승분 (3.8%반영)
	다급 37,278천원×3명	= 111,834	69,196	42,638	
	라급 32,847천원×1명	= 32,847	30,487	2,360	
	마급 27,478천원×6명	= 164,868	102,012	62,856	정규직 인원 증 (가1,다1,마2)
	기타보수 2,000천원×3명×1개월	= 6,000	6,000	0	
	계	103,223	90,733	12,490	
	계수당				
	대표이사 활동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 2,000천원×1명×12개월	= 24,000	24,000	0	
	시간외근무수당			12,832	
	- 10,331원×다급 3명×32시간×12개월	= 11,902	7,593	4,309	
	- 9,332원×라급 1명×32시간×12개월	= 3,584	3,430	154	
	- 8,378원×마급 6명×32시간×12개월	= 19,303	12,315	6,988	
	- 7,573원×기타 3명×20시간× 1개월	= 454	435	19	
	직급보조수당				정규직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
	- 가급 200천원×1명×12개월	= 2,400	-	2,400	
	- 다급 155천원×3명×12개월	= 5,580	3,720	1,860	
	- 라급 140천원×1명×12개월	= 1,680	1,680	-	
- 마급 105천원×6명×12개월	= 7,560	5,040	2,520		
정액급식비					
- 130천원×11명×12개월	= 17,160	10,920	6,240		
공무원과견수당					
- 5급이하 400천원×2명×12개월	= 9,600	21,600	△12,000		
계	123,961	56,191	67,770		
복리후생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 7천원×13명×10회×12개월	= 10,920	9,240	1,680		
교육 및 세미나 참석					
- 200천원×11명×1회	= 2,200	1,400	800		
직원 4대보험 부담금	= 46,384	22,255	24,129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금	= 18,340	-	18,340		
직원 선택적 복지					
- 500천원×21명×1회	= 10,500	-	10,500		
퇴직연금 부담금	= 31,775	20,056	11,719		
직원 단체보험 부담금	= 3,842	3,240	602		

구분	산출내역		'16년	'15년	증감액	비고
관 영 비	소 계		240,030	216,260	23,770	
	여 비	계	47,080	43,800	3,280	
		국내여비 180천원×13명×12개월	= 28,080	24,800	3,280	
		국외여비 2,500천원×8회	= 19,000	19,000	0	
	일 반 운 영 비	계	103,770	94,900	8,870	
		일반수용비				
		- 기본수용비 100천원×13명×12개월	= 15,600	13,200	2,400	
		- 외부회계감사 수수료	= 6,000	5,500	500	
		- 무인경비시스템 160천원×12개월	= 1,920	1,860	60	
		- 재단 홍보비	= 30,000	5,000	25,000	
		- 차량 임차료	= 12,000	12,000	-	
		- 사무실 임대료	= -	22,000	△22,000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도시가스, 통신료	= 30,750	29,340	1,410	
		- 우편요금	= 1,200	1,200	-	
차량유지비						
- 차량유류대	= 5,800	4,800	1,000			
- 고속도로 통행료	= 500	-	500			
업 무 추 진 비	계	32,680	32,68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0천원×12개월	= 24,000	24,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천원×12개월	= 4,800	4,800	-		
	정원가산업추진비 80천원×14명	= 880	8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천원×12개월	= 3,000	3,000	-		
전 산 개 발 비	계	41,000	29,380	11,620		
	홈페이지 유지보수	= 6,000	5,280	72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 20,000	18,000	2,000		
	예산회계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	= 9,000	6,100	2,900		
	근태관리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	= 6,000	-	6,000		
행 사 등 잡 비	계	15,500	15,500	-		
	이사회회 참석수당	= 8,000	8,000	-		
자문회의 등 참석수당	= 7,500	7,500	-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충북문화재단 기금 적립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연	700백만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재단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 도민들에게 우수하고 수준높은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출자·출연개요

- 사업위치 : 충북문화재단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설립자산 : 182억원
- 주요기능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활성화, 교육·연구 등

□ 산출기초

- 기금조성 목표액 : 289억원(2017년까지)
 - 2015년말 조성액 : 267억원
 - 2016년 계획 : 18억원(도 7억원, 시군 7억원, 이자수입 4억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2년	'13년	'14년	'15년
도비 출연금	3,500	800	1,000	1,000	700

□ 기대효과

- 문화재단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기반 마련 및 도민의 질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및 창작기반 지원 곤란
- 도와 시군 매칭으로 조성되는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시군 출연금(7억원) 확보 불가

충북문화재단 기금 조성 현황(계획)

□ 사업개요

- 조성기간 : 2015 ~ 2017(3년간)
- 목표금액 : 289억원(2017년까지)
- 조성재원 : 도 출연금, 시군출연금, 기금이자 수입 등
- 지원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 연도별 조성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계	기 조성					2016	2017
		기 조성	2012	2013	2014	2015		
계	289	185	15	22	27	18	18	4
국비	10	10						
도비	102	60	8	10	10	7	7	
시군비	108	63	7	12	12	7	7	
기타	69	52		2	3	4	4	4

□ 시군별 출연금

(단위 : 천원)

시군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700,000	1,200,000	1,200,000	700,000	700,000
청주시	116,900	206,540	206,540	167,700	167,700
충주시	87,200	135,820	135,820	87,200	87,200
제천시	83,200	125,520	125,520	83,200	83,200
청원군	50,800	94,660	94,660	-	-
보은군	44,500	77,580	77,580	44,500	44,500
옥천군	45,600	80,360	80,360	45,600	45,600
영동군	45,300	79,780	79,780	45,300	45,300
증평군	44,200	77,280	77,280	44,200	44,200
진천군	45,900	81,640	81,640	45,900	45,900
괴산군	44,500	77,860	77,860	44,500	44,500
음성군	47,600	85,860	85,860	47,600	47,600
단양군	44,300	77,100	77,100	44,300	44,300